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위험)					
1	2	3	4	5	6
매우 안정적	상대 안정적	다소 안정적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위험

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VaR)**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플러스 재형 와이드셀렉션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재형 와이드셀렉션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플러스 재형 와이드셀렉션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 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plusasset.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성기준일: 2024년 03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04월 1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T.02-3787-2700, www.plu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각 판매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요약 정보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참고]용어 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7년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4.03.20.

플러스 재형 와이드셀렉션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펀드코드 : AG434]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VaR)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 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잔여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 위험 및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플러스 재형 와이드셀렉션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주식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투자비용	명칭 (클래스)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재형 와이드셀렉션 1호	없음	0.678%	0.420%	-	0.678	69	142	218	37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클래스 펀드가 아니므로 '동종유형 총보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구분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3.21 ~ 24.03.20	22.03.21 ~ 24.03.20	21.03.21 ~ 24.03.20	19.03.21 ~ 24.03.20	13.03.18 ~ 24.03.20
	재형 와이드셀렉션 1호	2013-03-18	9.25	3.48	3.13	3.59	3.48
	비교지수 (%)	-	4.61	3.20	2.20	2.51	2.24
	수익률 변동성 (%)	-	2.37	2.83	3.07	3.57	4.09

(주1) 비교지수 : KOSPI 10%+국고채3년 70%+콜 2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영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영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영규모	운영역		운영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경우현	1978	책임(부장)	14개	1,014억원	11.02%	5.76%	11.02%	5.76%	18년 5개월
	이관홍	1968	부책임(전무)	1개	769억원	11.02%	5.76%	11.02%	5.76%	26년

(주1) '책임운영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영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 운영전문인력"은 책임운영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영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영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영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영경력년수'는 해당 운영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매입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환매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금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금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plu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금	<p>집합투자기금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p> <p>[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p> <p>[가입기간] 2015.12.31.까지</p> <p>[저축계약기간]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다만, 만기 7년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최대 10년)</p> <p>[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p> <p>[세제혜택] 계약기간 7년 유지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다만, 최초 계약기간 7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재형저축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가 부과됨</p> <p>[감면세액추징]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p>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전환절차 및 방법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2조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닙니다.		
집합투자 업자	플러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27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lu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4년 04월 19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닙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플러스 재형 와이드셀렉션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R5311AG4349(단축코드 : AG43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 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매입, 환매가 가능 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플러스 재형 와이드셀렉션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R5311AG4349(단축코드 : AG43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13.03.18.	①최초설정
2013.12.03.	①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
2013.12.03.	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최근현황 갱신
2014.01.24.	①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이지현 → 이관홍
2014.07.17.	①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②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일부 변경 ③최근 현황 갱신
2015.04.09.	①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②수익자에 대한 과세사항 상세기재 ③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기준변경 ④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일부변경(장외파생상품) ⑤규약 변경사항 반영(의무해지 및 임의해지 관련) ⑥최근현황 갱신
2015.04.17.	①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승철 → 최영재)
2015.07.01.	①채권평가회사 추가 ②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일부 변경 ③최근현황 갱신
2016.03.31.	①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영재 → 박승철) ②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등 관련사항 반영 ③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④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⑤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현황 변경 ⑥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⑦최근현황 업데이트
2016.07.02.	①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7.03.30.	①결산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 ②최근현황 갱신
2018.04.17.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②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11.02.	①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승철→경우현) ②최근현황 업데이트
2019.05.10.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②법 개정사항 반영
2019.06.19.	①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경우현 → 예호준)
2019.08.23.	①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9.09.27.	①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2019.01.14.	①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예호준 → 김대용) ②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최근현황 업데이트

2020.07.15.	①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대용 → 이상민) ②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2020.10.14.	①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상민 → 경우현) ②최근현황 업데이트
2021.08.31.	①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③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사항 반영 등) - 해당사항없음
2022.04.08.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2023.05.19.	투자설명서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위험등급 산출 관련 최근 3년 변동성 값 업데이트(3.99%→3.87%) ②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보수 및 비용 표 하단 주석 문구 보완 -증권대차거래 정보 공시 관련 추가 -거래비용 정보 공시 관련 추가 -매매회전율공시 관련 추가
2024.04.19.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위험등급 산출 관련 최근 3년 변동성 값 업데이트(표준편차: 3.87% → VaR: 7.14%) ②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표 추가 ③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플러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hree IFC 36층 (T. 02-3787-2700, www.plusasset.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주요담당업무 및 재직기간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경우현	1978	책임 (부장)	14개	1,014억원	11.02%	5.76%	11.02%	5.76%	18년 5개월	2005.04~2016.03 대신자산운용 주식운용 2016.05~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주식운용
이관홍	1968	부책임 (전무)	1개	769억원	11.02%	5.76%	11.02%	5.76%	26년	2006.01~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경우현(1개 /105억원), 이관홍(해당사항 없음)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주요담당업무 및 재직기간'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이력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경우현	2020.10.14.~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내역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1) 비교지수는 KOSPI 10% + 국고채3년 70% + 콜 20%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며,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상 주식 편입비는 3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선물 포지션 등으로 인한 실 주식투자비중은 10% 수준으로 운용하므로 상기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재형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수익자에 대한 과

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주식	30% 미만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다만, 주식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40%미만으로 합니다.		
②채권	50% 이상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주식관련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⑥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10% 이하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등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⑦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⑧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 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⑨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⑩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①~⑩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예치(단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위의 ①~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의 대여 및 증권의 차입 거래의 목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	

	<p>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에의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도 및 제한의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동일종목 투자제한" 및 "파생상품 거래"의 규정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① 롱숏전략

㉠ **싱글&포트폴리오 알파**

지수대비 초과이익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및 ETF를 매수(Long)하는 한 편, 시장위험을 지수선물 매도(Short)로 헤지

㉡ **페어트레이딩**

지수대비 초과이익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매수(Long)하는 한편, 대차주식 현물을 매도(Short)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지수, 섹터 등)매매**

㉣ **거시경제 분석 + 기술적 분석 + 수급 분석을 이용하여 주가지수의 단기 방향성 예측**

시장이 상승할 때 투자비중 확대, 시장이 하락할 때 손절 및 비중축소
(변동성 축소 시 투자 확대하고, 변동성 확대시 전략실행 중단 등 방향성과 변동성 분석 병행)

㉤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전략이 아니며,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만 진입하여 전략을 실행**

㉣ **파생상품 운용전략**

㉥ **데이트레이딩: 기술적 분석 + 수급 분석을 이용하여 주가지수의 장중 방향성 예측**

시장이 상승할 때 투자비중 확대, 시장이 하락할 때 손절 및 비중축소
(변동성 축소 시 투자 확대하고, 변동성 확대시 전략실행 중단 등 방향성과 변동성 분석 병행)

㉦ **시장의 이벤트가 예정된 경우나 시장의 변동성 및 방향성 확대기간 등을 분석하여 옵션 단일방향 매수 및 양매수 전략**

㉧ **공모주 운용전략**

㉧ **철저한 기업분석과 합리적인 수요예측으로 선별 투자하며, 공모기업 분석 방법에 의한 개별 위험 축소 및 기업 현장조사(실사) 강화를 중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차익거래**

㉩ **KOSPI200관련 ETF와 선물과의 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 된 자산을 매도하여 수익 추구**

ETF 저평가시[선물가격-ETF가격 >이론베이스스]		ETF 고평가시 [선물가격-ETF가격 <이론베이스스]	
매수 차익거래 구축포지션	차익실현	매도 차익거래 구축포지션	차익실현
ETF 매수 선물 매도	ETF를 매도하고 선물 매도포지션 청산	ETF 매도 선물 매수	ETF를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여 포지션 정리

주1) 이론 베이스스란 선물이론가격에서 현물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이벤트 전략**

㉬ **블럭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기회 발생 시 제한적 참여를 통한 이익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럭딜(Block Deal):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와 이를 매수하려는 매수자가 불확실성을 피하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는 것을 말함 ▶ 전환사채(CB):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교환사채(EB):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 시일 경과 후 발행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
--

㉭ **주식연계채권과 해당 주식(또는 주식선물)을 활용한 대차 매도**

▶ 주식연계채권을 보유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권리의 전환가격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주가 상승시 주식을 빌려 매도(공매도)하게 됩니다.

- 주식 공매도의 기준은 패리티(전환가치, Parity=현재주가/전환가격)로 판단합니다.
- 패리티가 당사 기준에 의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식 대차하여 공매하고, 이하로 내려가면 공매한 주식을 상환합니다.
- 유동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주식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주식선물매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⑦ 채권운용 전략

수익률 곡선 전략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 하는 성질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가파른 수익률 곡선 상에서 캐리 및 롤링효과를 최대화 하는 만기의 채권에 투자 -캐리효과 : 채권 보유함으로 얻어지는 이자수익 -롤링효과 : 채권의 잔존기간이 단축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롱숏 전략	상대가치 분석을 통해 고평가된 채권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채권을 매수하는 전략 - 스프레드(이종 채권의 가격차이) 운용전략 : 스프레드 거래는 두 종목중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는 전략 두 종목간 가격관계가 비정상적인 괴리를 보일때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추구 - 대차매도전략: 보유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이 풍부한 국고채를 빌려 매도하고 이 자금으로 채권을 매수
캐리 전략	채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채권 고유한 특징인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 레포(환매조건부채권)매도전략 : 일정기일 후 일정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매수) 하는 거래로, 실제로는 보유 채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입 - 만기보유전략: 채권을 만기시점까지 보유함으로써 투자시점에서 수익을 확보

주1) 비교지수는 KOSPI 10% + 국고채3년 70% + 콜 20%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며,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상 주식편입비는 3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선물 포지션 등으로 인한 실 주식투자비중은 10% 수준으로 운용하므로 상기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주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투자신탁입니다. 자산총액의 30% 미만 한도내에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투자 시에는 상기 ①~⑥전략의 조합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2) 위험관리

- ①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 ② 시장의 흐름을 추종하는 근시안적 전략을 지양하고, 가치평가를 통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 ③ 거시경제분석, 기술적분석, 수급분석을 통하여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 ④ 전략별 상관관계가 적은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 ⑤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⑥ 우량 채권 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안정성 및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성합니다.
- ⑦ 주식관련채권의 가격이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채권만을 매입함으로써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가격변동위험에 대응합니다.
- ⑧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투자자의 수익극대화 도모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나. 수익구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단기유동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변동 및 채권의 이자수익과 가격변동에 의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무자, 투자대상회사 또는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의 신용등급의 변화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산상의 손실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50%이상을 채권(신용등급 A- 이상 주식연계채권 포함)에 투자하고 30% 미만을 주식에 투자(단, 주식 및 ETF에의 투자는 40% 미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주1)}(**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고려한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기준표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이 투자신탁의 최근3년 변동성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설정일	결산일	산출기준일	최근 3년 변동성
2013.03.18.	2024.03.17.	2024.03.15.(종가)	7.14%

주1) 수익률 변동성 :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산출하였습니다.

주2) 추후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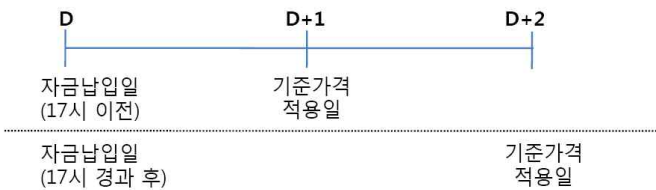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① **오후 5시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오후 5시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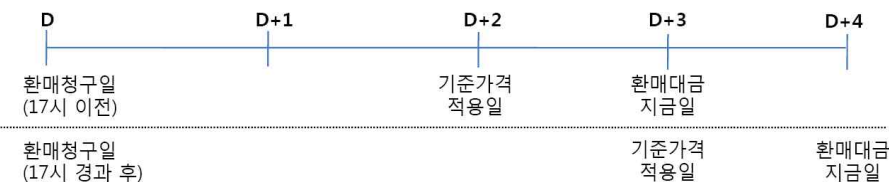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해당사항 없음 (단, 일부환매 불가)	해당사항 없음	○ (단, 일부환매 불가)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5시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5시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 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 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1)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2)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1)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3)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환매연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제2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공고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매일 산정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 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 손실을 인식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평가기준일에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연간, %)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재형 와이드셀렉션 1호	가입제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 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 비용
재형 와이드셀렉션 1호	0.2200	0.4200	0.0200	0.0180	0.6780	0.0000	0.6780	-	0.6780	0.1239
지급 시기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매3개월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의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원)
기타비용	-

주2) 증권거래비용은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거래수수료, 현금중개수수료, 대차/대주 또는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등) 매매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비용의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원)
증권거래비용	18,441

주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클래스 펀드가 아니므로 '동종유형 총보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6)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금융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원)
금융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재형 와이드셀렉션 1호	69	142	218	379	84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세무관련 사항은 투자신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익 배분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2)투자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3)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이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익자의 환매청구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포함)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평가 손실이 과세대상인 채권이자, 채권 매매·평가 이익,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재형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재형저축을 대상으로 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저축계약기간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가 없을 것 다만, 만기 7년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최대 10년)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계약기간 7년 유지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다만, 최초 계약기간 7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재형저축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가 부과됨
감면세액추징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재형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재무상태표		
	제 11기 (2024.03.17)	제 10기 (2023.03.17)	제 9기 (2022.03.17)
운용자산	15,285,768	14,085,766	22,343,704
증권	12,220,006	11,752,433	20,097,96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065,762	2,333,333	2,245,74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2,461	212,061	138,917
자산총계	15,348,229	14,297,827	22,482,62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5,626	182,905	37,403
부채총계	25,626	182,905	37,403
원본	12,723,459	12,533,466	19,514,632
수익조정금	-1,355	156,544	-683,969
이익잉여금	2,600,499	1,424,912	3,614,555
자본총계	15,322,603	14,114,922	22,445,218

(단위: 원, %)

항 목	손익계산서		
	제 11기 (2023.03.18 - 2024.03.17)	제 10기 (2022.03.18 - 2023.03.17)	제 9기 (2021.03.18 - 2022.03.17)
운용수익	1,343,082	-426,362	810,561
이자수익	431,066	345,912	265,713
배당수익	42,621	52,926	83,790
매매/평가차익(손)	869,395	-825,200	461,058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00,231	126,273	197,867
관련회사 보수	97,680	123,141	192,781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551	3,132	5,086
당기순이익	1,242,851	-552,635	612,694
매매회전율	375.03	388.03	275.35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백만원, %)

구분	당기(2023.03.18 - 2024.03.17)			전기(2022.03.18 - 2023.03.17)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9	0.0184	0.0996	20	0	0.0992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19	0.0184	0.0996	20	0	0.0992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49	9	311	9	3	375.03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 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제11기(2024.03.17)		제10기(2023.03.17)		제9기(2022.03.1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3,065,762		2,333,333		2,245,742
1. 현금및현금성자산	3,065,762		2,333,333		2,245,742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플른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2,220,006		11,752,433		20,097,962
1. 지분증권	2,305,650		1,837,060		5,120,550	
2. 채무증권	9,914,356		9,915,373		14,977,412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62,461		212,061		138,91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39,476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2,175		35,345		86,231	
4. 미수배당금	30,286		37,240		52,686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5,348,229		14,297,827		22,482,621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5,626		182,905		37,403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59,592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25,626		23,313		37,403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5,626		182,905		37,403
자 본						
1. 원 본		12,723,459		12,533,466		19,514,632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599,144		1,581,456		2,930,586
(발행좌수 당기: 12,723,459 좌			이익잉여금	2,600,499	1,424,912	3,614,555
전기: 12,533,466 좌			수익조정금	-1,355	156,544	-683,969
전전기: 19,514,632 좌)						
(기준가격 당기: 1,175.53 원						
전기: 1,106.60 원						
전전기: 1,148.23 원)						
자 본 총 계		15,322,603		14,114,922		22,445,21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5,348,229		14,297,827		22,482,621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11기(2023.03.18-2024.03.17)		제10기(2022.03.18-2023.03.17)		제9기(2021.03.18-2022.03.1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73,687		398,838		349,503
1. 이 자 수 익	431,066		345,912		265,713	
2. 배당금수익	42,621		52,926		83,790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244,281		677,001		2,614,481
1. 지분증권매매차익	1,100,630		666,627		2,614,481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794		10,374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42,857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74,886		1,502,201		2,153,423
1. 지분증권매매차손	358,423		1,055,205		443,75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6,463		21,291		118,769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425,705		1,590,904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100,231		126,273		197,867
1. 운용수수료	32,559		41,050		64,234	
2. 판매수수료	62,323		78,550		122,812	
3. 수탁수수료	2,798		3,541		5,735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551		3,132		5,086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242,851		-552,635		612,69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97681849		-0.044092751		0.03139664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천좌 / 천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18 - 2024.03.17	12,533	13,869	190	210	0	0	12,723	15,323
2022.03.18 - 2023.03.17	19,515	22,407	29	33	7,010	7,773	12,533	14,115
2021.03.18 - 2022.03.17	27,396	30,833	664	747	8,546	9,748	19,515	22,445

주1) 2023.03.18 - 2024.03.1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67,016좌/313,884원

주2) 2022.03.18 - 2023.03.1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89,993좌/210,271원

주3) 2021.03.18 - 2022.03.17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8,989좌/33,286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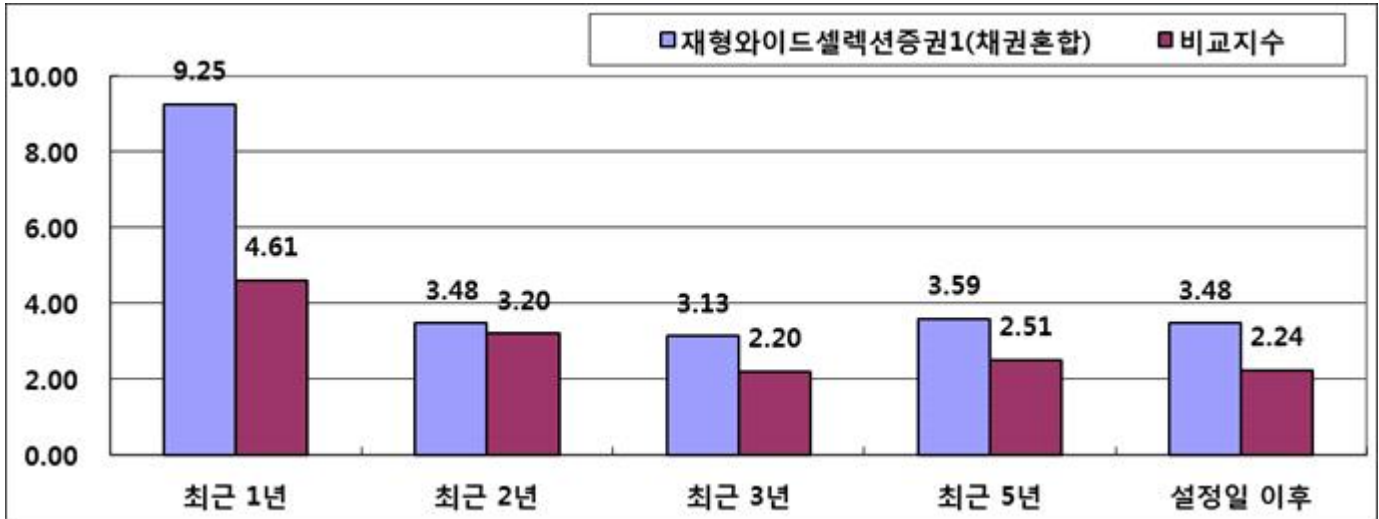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3.21 ~ 24.03.20	22.03.21 ~ 24.03.20	21.03.21 ~ 24.03.20	19.03.21 ~ 24.03.20	13.03.18 ~ 24.03.20
재형와이드셀렉션증권1(채권혼합)	9.25	3.48	3.13	3.59	3.48
비교지수	4.61	3.20	2.20	2.51	2.24
수익률변동성(%)	2.37	2.83	3.07	3.57	4.09

주1) 비교지수: KOSPI 10% + 국고채3년 70% + 콜 2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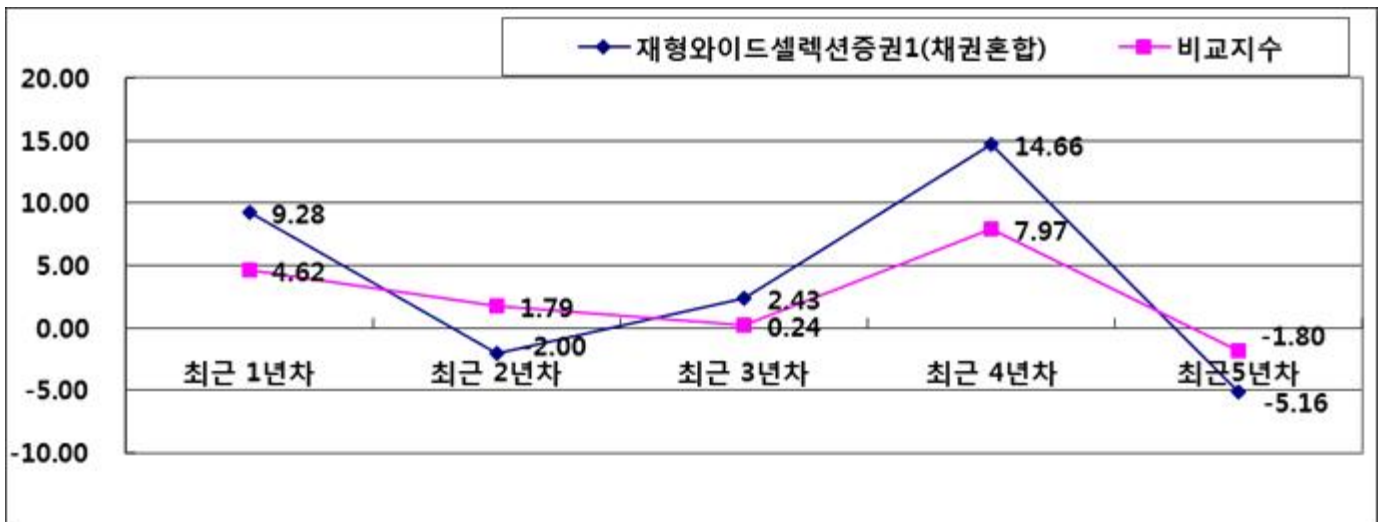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3.03.21 ~ 24.03.20	22.03.21 ~ 23.03.20	21.03.21 ~ 22.03.20	20.03.21 ~ 21.03.20	19.03.21 ~ 20.03.20
재형와이드셀렉션증권1(채권혼합)	9.28	-2.00	2.43	14.66	-5.16
비교지수	4.62	1.79	0.24	7.97	-1.80

주1) 비교지수: KOSPI 10% + 국고채3년 70% + 콜 2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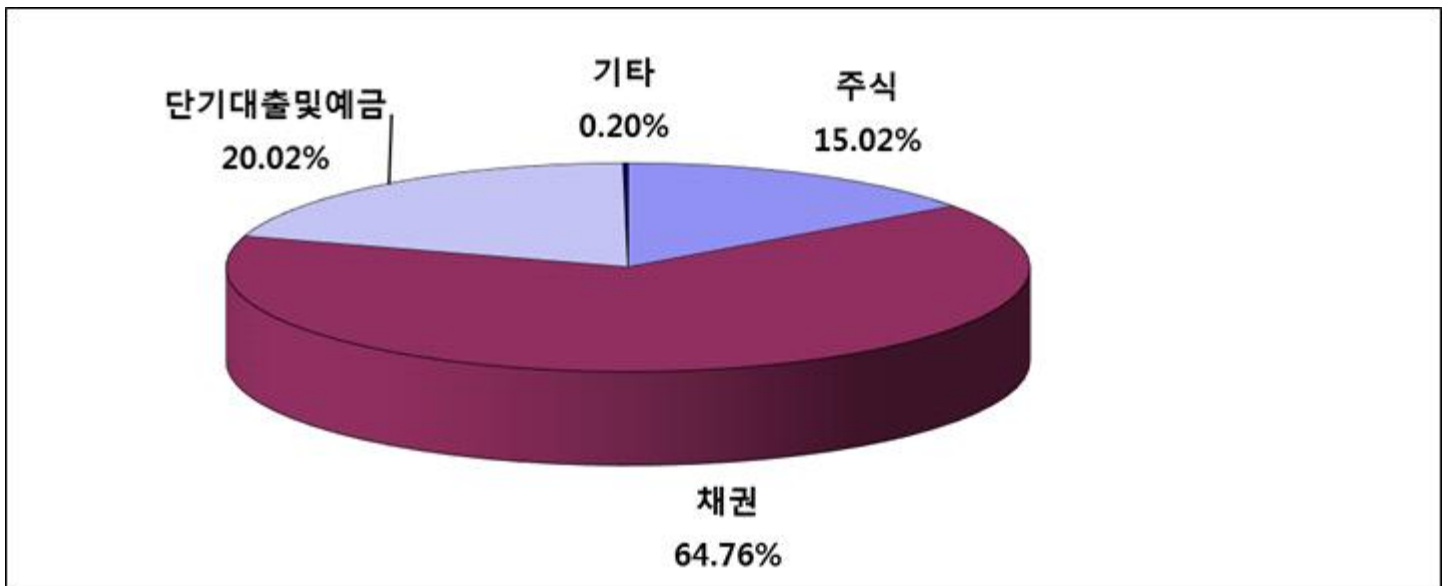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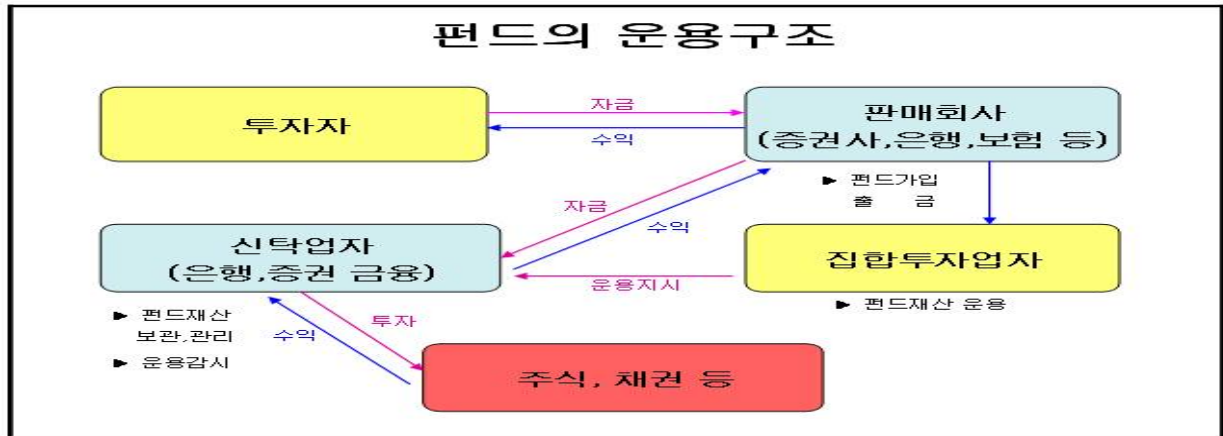
[2024.03.17 현재 / 단위: 천원,%]

통화 별 구 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 산	기타			
KRW	2,306	9,940	0	0	0	0	0	0	0	3,073	30	15,348
	(15.02)	(64.7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2)	(0.20)	(100.00)
합계	2,306	9,940	0	0	0	0	0	0	0	3,073	30	15,348
	(15.02)	(64.7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2)	(0.20)	(100.00)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국제금융센터 Three IFC (T.02-3787-2700, www.plusasset.com)
회사연혁	2000년 01월 : 회사설립 2000년 04월 : 자산운용사 등록(금융감독위원회) 2001년 03월 : 투자자문(일임)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2003년 01월 : 플러스자산운용(주)으로 회사명 변경 2004년 04월 : 수익증권 1호 펀드설정 2015년 08월 : 수탁고 4조원 돌파 2019년 04월 :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2020년 01월 : 수탁고 5조원 돌파 2020년 02월 : 수탁고 7조원 돌파
자본금	100억
주요주주현황	윤호중(100%)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3.12.31	'22.12.31	계정과목	'23.12.31	'22.12.31
유동자산	19,058	18,960	영업수익	4,254	4,687
고정자산	4,269	1,992	영업비용	3,854	4,097
자산총계	23,327	20,952	영업이익	400	590
유동부채	637	615	영업외수익	0	206
고정부채	2,198	97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2,835	712	경상이익	400	796
자본금	10,000	10,000	세전순이익	400	796
이익잉여금	10,557	10,240	법인세등	83	173
자본총계	20,492	20,240	당기순이익	317	623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3.20.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30	2,489	920	-	-	360	600	-	37,186	41,885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농협은행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 (T. 02-2080-5114, www.nonghyup.com)
회사연혁	1961.08 : 설립 2000.07 :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 2007.06 : '비전2015' 및 CI선포 '대한민국 NO.1 유통.금융리더' 비전 선포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NH' 선포 2008.02 : IB센터 공식 출범 2012.03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하여 농협은행 출범

(2)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신탁업자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④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전자등록기관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⑧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⑨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1)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2)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7)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http://www.shinhanfundpartners.co.kr)
회사연혁	2000년 일반사무관리업무서비스개시 2008년 신한은행 자회사 편입 2012년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3년 신한펀드파트너스 사명 변경

(2)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채권평가(주)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T.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T.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T.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동5길 29 (T.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1)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3)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지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 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3)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의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가지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인터넷(www.plu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위의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의 (3) 및 (4)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월이 종료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신탁계약기간의 해지일 현재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로부터 당해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조 에서 정한 사유로 변

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함))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사유·절차 및 손실·손해 배상

①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4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9조와는 별도로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자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상 금액 :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 × 집합투자규약 제39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

2. 대상 기간 : 변경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법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집합투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 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2)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1)지분증권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조사분석서비스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산업, 기업 분석 ▪ 정보제공(시장동향, 기업동향, 자료 요청) ▪ 기업탐방 및 IR 지원 ▪ 세미나 개최 	주식운용 담당자 주식리서치 담당자	80%
주문집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유리한 호가의 제공 ▪ 오류발생 빈도 	주식매매업무 담당자	15%
Settl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ck Office 협조 능력 	운용지원 담당자	5%

(2)채무증권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 및 상품 정보 제공 ▪ 시장동향 자료, 세미나 지원 등 	채권운용 담당자 채권리서치 담당자	60%
주문집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한 호가 제공 ▪ 신속/정확한 응대 및 체결 	채권매매업무 담당자	30%
Settl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ck Office 협조 능력 	운용지원 담당자	10%

(3)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능력 	파생상품운용 담당자	60%

주문집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정보 및 기타 운용기여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오류발생 빈도 ▪ 당사 운용시스템과의 호환성 	파생상품매매업무 담당자	40%
--------	---	--------------	-----

주1) 매매업무담당자는 해당 운용본부장의 확인을 받은 중개회사의 명단을 평가자에게 제공하며, 평가자는 그 중개 회사에 대하여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2) 평가자는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5단계(10, 8, 6, 4, 2점)로 평가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재형저축 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